

統一情勢分析 2001-03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

2001. 3

최 의 철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소장)

통 일 연 구 원

< 요약 >

- 북한은 1981년 9월에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1983년과 1984년에 1차 정기보고서 및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2000년 7월 제6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는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인권실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고, 인권소위원회는 두 차례의 북한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당국에게 정치범수용소 문제, 거주·여행의 자유 보장 및 국제인권규약 준수 등을 촉구한 바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7년 북한이 국제인권규약 B규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음.
- 냉전종식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이 각국의 주권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음(예, 코소보 및 동티모르에 개입 등).
- 북한 당국은 김정일 정부에 대한 국제적 지지 구축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은 자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의 개요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과 신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소개한 것으로 자결권 강조, 기본권 신장 및 국제인권규약 존중 등을 보고함.

○1984년 1차 추가보고서와는 달리 2차 정기보고서에서 추가된 내용은 국가위기 시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제한, 국제인권규약의 임의적 해석금지,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을 소개하고 1984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선언적 차원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준수를 약속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북한 당국이 보고한 인권관련 법적 보호와 인권실태와의 괴리가 현격하여 실질적인 인권개선 조치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유엔 산하 인권기구, 국제사면위원회(AI),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보고서」 및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등 국내외 단체들이 지

적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공개처형이나 사법권을 초월한 사형, 정치범수용소와 행방불명,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거주·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분류에 의한 주민들의 차별대우 및 식량난에 의한 생존권 위협 등임.

○그러나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적 고립 탈피와 이미지 개선을 모색할 것임.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비판적인 유럽연합회원국들과의 국교 수립(3월 6일 현재 독일을 포함한 12개국)을 통해서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강경책으로 예상되는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완화시키려 할 것임.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대외에 선전하면서 비전향장기수 및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것임.

○한편 북한 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중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인권단체들의 북한 방문에 대한 제한적이고 선택적 허용,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보장, 공개처형과 외국인 납치 자제, 1995년 형법 개정 내용 공개 및 엄격한 규제 하에

외국정보의 선택적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임.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및 그 가족들의 송환 요구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함.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은 국제적 관례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등 다자적 접근과 우방을 통한 대북 설득과 우회적인 압력도 효과적임.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유엔과 북한인권

1.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거론 사례
2.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거론 사례
3.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4.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

III.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 분석 및 평가

1.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제출 배경
2.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의 개요
3.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

IV. 북한의 인권외교

1. 북한의 대외개방과 인권개선 가능성
2. 북한의 인권외교 추진 방향

V. 우리의 고려사항

I. 문제제기

- 유엔은 1990년대 들어 유엔인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소위)¹⁾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두 차례(1997년 제49차 및 1998년 제50차 회의)에 걸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북한은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 대해 국가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1997년 8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으로부터의 탈퇴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유엔인권위는 동년 10월 북한의 탈퇴불가를 통보하였음.
-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0년 7월 제67차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²⁾에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1) 유엔인권소위는 유엔인권위의 산하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소수민족의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임. 유엔인권소위는 유엔인권위가 선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유엔인권위의 위임사항 처리, 유엔인권위에 대한 권고 및 인권관련 활동 등을 수행함.

2) 인권이사회는 1977년 국제인권규약 B규약이 발효된 이후 동 규약 제28조에 의거하여 발족된 인권기구로 개인자격으로 선출된 4년 임기 18인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정부가 채택한 공식번역어로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혼동하기 쉬움.

- 북한은 1981년 9월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가입한 이래 1983년 10월에 1차 보고서와 1984년 4월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오다 16년만에 보고서를 제출함.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대북 인권외교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대북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I. 유엔과 북한인권

1.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거론 사례

○ 냉전종식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각국의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음.

○ 1993년 제49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부터 1998년 제54차 회의까지 미국, 유럽국가 및 러시아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당국의 국제인권기준 준수 및 정치범 석방 촉구
- 북한 당국의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북한의 인권개선 중용
- 북한의 기본권 박탈 및 양심수 구금·실종 등 비판
- 정치범 구금,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 촉구
-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 불허 등

2. 유엔인권소위와 북한인권 거론 사례

○ 유엔인권소위는 1992년 제42차 회의 때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

적해 왔는 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992년 제44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미국 Abram 위원은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
- 1994년 영국의 Merrills과 Palley 위원은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음.
- 1995년 미국 Chavez 위원이 북한의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게 정보접근 허용을 촉구함

3.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가.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

(1) 제49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1997년 제49차 유엔인권소위는 Louis Joinet 프랑스 위원이 상정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 바,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수용소 내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인권위반 사실과 북한 인권 관련 정보 입수 및 북한방문 어려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전문)
-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촉구(제1항)
-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촉구와 유엔이 규정한 각

종절차에 협력 요청(제2항)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 등 고립을 탈피하는 데 지원(제3, 4항)

(2) 제50차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

○1998년 제50차 유엔인권소위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1997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함.

- Jointet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97년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인권문제는 양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특히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불법 처형, 실종 및 수천 명의 정치범 억류와 이들에 대한 학대에 따른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이상 전문)
-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제2항)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협력할 것(제3항)

-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허용 및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북한 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제4항)
-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기아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 요청(제5, 6항)
- 유엔인권위가 차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유엔인권위가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 유엔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함(제7항).

4.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의의

가.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

- 냉전종식 이후 인권문제가 국가주권 행위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사고가 도전을 받고 있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제적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 유엔인권소위의 두 차례의 결의안 채택은 유엔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나.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불허

○ 제49차 유엔인권소위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1997년 8월 25일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유엔인권위는 1997년 10월 29일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B규약 탈퇴가 성립되지 않음을 발표하고, 이를 북한에 통고함.

- 탈퇴 불허 결정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에서 계속 토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다. 국제 및 민간인권단체에 대한 북한의 태도 수정 요구

○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 방문 및 실태조사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한 것임.

III.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 분석 및 평가

1.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제출 배경

- 유엔과 국제사회가 각국의 인권문제를 안보문제와 연계하여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고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 등은 지역사회의 무력개입을 초래한 바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유엔기구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들의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대북 여론을 조성함.
 - 탈북자들이 유엔인권소위 위원들과의 접촉 및 미국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등 국제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북한에게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 또한 인권관련 국내외 비정부기구들(NGOs)의 적극적인 운동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함.
- 북한 당국은 김정일 정부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권문제는 대외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희석시킬 필요가 증대됨.

-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응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에 노력하고
- 미국과 일본의 반북여론을 무마하고, 특히 당시 클린턴 미행정부와의 관계정상화 협상을 촉진시키며
-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관계정상화를 촉진시키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KEDO에 7천 5백만 유로 등 총 2억 8천만 유로(약 2억 6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함).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함.

2.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의 개요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는 관례에 따라 국제인권규약 B규약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북한의 법적 조치를 소개한 것으로 총 29조 39쪽(영문)으로 구성됨.

- 그 주요 내용은 주로 1984년부터 1997년 기간 동안의 헌법의 개정과 보완,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변호

사법,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기타 법률들의 채택, 개정 및 보완 사항을 기술함.

가. 자결권과 인권보장

- 북한 헌법은 북한정부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주권은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에 있고 국가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천명함.
 - 또한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는 북한의 주권사안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킴.

나. 기본권의 신장

- 북한은 헌법, 형법 및 인권관련 법률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신장되었음을 강조함.
 - 자유권, 평등권 및 무상교육과 치료 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보완(1987년과 1995년)을 통해서
 - 생존권과 관련,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3개에서 5개로 감축시켰고
 - 신체의 자유와 관련, 피심자 또는 피소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 국가위기 시에도 인권침해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

○1990년 신 민법의 제정으로 소유권 보장 등 주민의 민사상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함.

○1990년 가족법 제정으로 남녀평등, 가족보호, 결혼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함.

다. 국제인권규약 존중

○북한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약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함.

-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거나 저하시키지 않음.

- 이와 관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주민들에게 홍보함.

라. 2차 정기보고서의 추가조항

○1984년 추가보고서와는 달리 2000년 2차 정기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위기 시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제한

- 국제인권규약의 임의적 해석금지
-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인신 구속 금지
- 기타 1984년에 보고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과 관련된 인권 신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

3.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생명권 존중

(1) 생명권의 법적 보장과 사형에 대한 제한

○ 모든 주민의 생명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여 임의적인 생명박탈과 테러 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법을 적용함.

- 불법적인 생명권의 박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
-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안요원의 무기사용을 엄격히 규제

(2) 전쟁 기타 위협으로부터의 생명권의 보호

○북한은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 공격적 전쟁, 특히 핵전쟁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거부함.

- 전쟁 위협을 막고 평화적인 국가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남북 연방제가 최상의 방도라고 주장

(3) 주민생활의 개선 노력

○정부는 주민의 거주환경 보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환경법 등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상치료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있음.

(4) 실종에 대한 신속한 조치

○북한에서 주민들의 실종(행방불명)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이 없음.

- 행방불명의 경우 공안기관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함.

(5) 사형의 제한과 절차

○사형은 국가 전복음모, 반역죄, 테러, 반정부적인 배반행위와 국제

적인 살인 등 5개항의 심각한 범죄에 제한됨.

-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음.
- 중앙과 지방의 고위 사법기관에 의해서만 사형 언도가 가능
- 사형의 집행은 최고인민회의 간부회의(presidium)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 기관만이 특별사면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형집행에 대해서 신중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과시
- 17세 이하의 미성년과 임신부에 대한 사형언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부 수립이후 이들에 대한 사형언도는 전무함.
- 북한 정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추구하고 있음

(6) 생체실험 금지

○ 생체실험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음.

(7) 평가

○ 북한 형법에서 사형에 대한 조항의 개념규정이 모호(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범과 양심수 및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음.

- 북한관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이 집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사형의 판결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

- 북한 당국은 탈북자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법 제47조가 1995년에 개정되었다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에 통보하였으나 개정된 조항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기피

○사형의 방법에서도 주민 통제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비인도적인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음.

- 1995년 북한관리는 1985년 이후 1~2건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하나 AI는 1993년 특별보고서 및 1997년의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 23명이 공개처형 되었다고 밝힘.
-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정치범, 흉악범, 경제사범 및 좀도둑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로 공개처형이 실시됨.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행방불명 등 실종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음.

- 탈북자들의 증언 및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주위사람들도 모르게 국가안전보위부원에 의해 연행되어 정치범수용소(북한에서는 ‘00 관리소’로 불려지고, 10개소

에 15만~20만이 수용)³⁾로 보내짐.

- 또한 한국과 일본정부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에 대한 납치 행위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주장함(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난 30여 년간 20여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었고, 한국 고등학생 5명은 북한에 납치되어 간첩교육에 투입).⁴⁾
- AI는 외국인들과 접촉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종되거나 처형되었다고 보고⁵⁾

나. 신체의 자유

(1)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 처우나 처벌 폐지에 대한 법적 조치

○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 구금 중에 고문이나 모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음.
- 수용소의 관리요원은 구금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문 및 공격적, 모욕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최고

3) 최의철, 「미 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 비교분석」, 통일정세분석 2000-02(통일연구원), p. 11.

4) 위의 논문, p. 8.

5)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2000(이하 「미 북한인권보고서-2000」), p. 3.

4년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음.

-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로 노동력을 잃을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적인 구금 기간의 봉급을 완전히 보상받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독방감금이나 체벌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은 법으로 금지

(2)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 처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

○법 집행 관리들과 국가기관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검찰 등 국가기관이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 피소자(피고인)과 피심자(피조사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찰은 3일 내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 당사자에 결과 통보

○형사사건은 증거우선원칙의 엄격한 준수와 정확성, 객관성, 신중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도록 관리들을 교육시킴.

(3)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북한에서 노예제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않음.

○노동자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고, 직업은 당사자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선택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업무가 배분됨.

- 계층간 반목과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은 제거됨.

○법원의 판단에 따른 노동교화형 이외에 범법자에 대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부여는 금지되어 있음.

- 북한에서 강제되거나 강요된 근로는 어떠한 형태든 금지
- 억류, 감금되거나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못함.

(4) 개인의 자유와 안전: 체포와 억류의 조건

(가) 자유와 신변 안전의 권리

○헌법에서는 주민이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주택을 수색할 수 없음.

○피심자가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해당될 때 가택연금이나 일정 지역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주지 제한 조치 가능

- 1년 이상의 노동교화형과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사건은 예비심리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 억류 가능

○형사소송법은 구금은 억류와 가택연금, 일정 지역 및 거주지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함.

(나) 혐의 및 체포에 대한 통보

○예비심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혐의를 통보해야 함.

- 형사책임 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 내에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피심자에게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개인이 체포되는 경우에 그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48시간 내에 통보

(다) 억류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구치소는 미결수, 교화소는 기결수를 억류하고, 미결수는 무죄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함.

- 수감자의 비인간적 처우는 금지되고, 교화소의 시설은 냉난방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며, 무상치료, 외부와의 접촉 허용

(5) 평가

○북한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가 만연되어 있음.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발부하는 사전연장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절차도 법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정기관의 시설은 열악하고, 죄수들은 구타, 질병, 굶주림, 유기 등 학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 수감자들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에 동원됨.
- 작업량 미달 시 식사 배급량이 감소됨.
- 군에 의해 수감자들은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함.⁶⁾
-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자는 다른 죄수들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음.⁷⁾

6)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Reports for 1999(이하 「미 북한인권보고서-1999」) 참조.

7) 「미 북한인권보고서-1999와 -2000」 참조.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의 금지, 친지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됨.

○북한 당국은 빈번하게 주민들을 건설현장에 동원하고 있음.

- AI는 벌목, 추수돕기와 같은 강제노동이 죄수들 사이에 공통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보고
-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생들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의 노동에 동원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 됨.⁸⁾

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민들은 법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짐.

- 재판심리는 재판장인 판사와 두 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됨.
- 최고 법원인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

8) 『북한인권백서 2000』 (통일연구원: 서울, 1999), p. 27.

인민위원회가 선출함.

-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수행함.
 -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나, 법이 정한데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심자나 피소자가 변호인 선정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부재중에 판결이 내려진 재판은 조건 없이 무효임.

- 14세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함.

(2)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유효기간

- 형법 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행 당시의 형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움.
 - 종전의 형법에 의해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이 죄로 보지 않거나 또는 범죄 형벌이 종전 법보다 낮춰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름.
 - 형법 조항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중요원칙은 법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음.

(3) 평가

○북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처벌할 수 있음.

- 북한 형법 제10조(1987년)⁹⁾는 “범죄를 한 경우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함.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제약이 없어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어 형사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형법 42조).

- 정치범의 경우 재판절차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단독으로 처벌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음(형법 15조).

○반국가적인 범죄행위 또는 조국반역행위 등 정치범에 대해서 형벌과 재산몰수형을 병행하고 있음(형법 44조~47조 및 52조).

9) 북한이 1995년 형법소송법 개정안을 밝히지 않는 이유로 1987년 형법을 준용함.

- 변호인의 역할과 관련, 변호사는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으로 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함.
 - 많은 경우에 피소자의 자백을 유도

라. 평등권

(1) 평등한 자유와 권리 보장

- 북한의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와 활동에서 주민들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민은 성별, 민족별,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 북한의 남녀평등법에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 등 모든 생활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은 남성과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토지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근로권 보장

- 여성의 인신매매나 일부다처제의 금지를 명시

(2) 평가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여 핵심, 동요, 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함.

- 이와 같은 계층 분류에 따라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및 때로는 재판의 형량판정에 이르기까지 차별 대우를 받음.
-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를 적용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와 신체장애자들은 평양 또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함.

- 신체장애자 중 영구피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자유권

(1) 거주·여행의 자유

○북한 헌법은 주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이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고함.

- 여행은 각급 인민위원회가 발행하는 여행증이 있는 경우에 여행에 제한이 없음.
- 주민과 외국인은 거주에 자유가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등록해야 함.
- 불법적인 입국과 북한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강제출국을 명령할 수 있음.

○ 주민은 공무와 사무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규칙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 임의로 추방할 수 없음.

- 1985년 이후 국가령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한 명뿐임.

(2) 사생활 보호

○ 법적으로 모든 주민은 가족, 주택, 사생활 및 서신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받음.

-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을 강조함.
- 주택 수색은 검사의 승인 하에 집행하고 사생활과 사적인 서신에 대한 불법 또는 임의적인 간섭은 금지됨.
-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 사건으로 간주함

(3) 종교의 자유

○ 헌법은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허용함.

-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연맹, 조선천주교협의회(association),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 단체가 존재하고, 종교단체에 의한 교육기관도 허용됨.
- 1989년에 김일성대학에 종교학부를 신설함.
-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고, 모든 종교는 평등함.

(4) 표현, 언론의 자유

○ 헌법에 주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를 전복, 문란, 약화시키려고 고무하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하려고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은 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
- 외국기자들은 외국기자활동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기사 수집과 보도의 자유 보장

(5) 결사의 자유

- 헌법은 주민들의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민주당과 공공조직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수십 개의 공공조직이 존재

- 북한에는 정당조직에 관한 별개의 법이 없음.
 - 그 이유는 정부 수립이후 50년간 기존 정당들이 활동을 해 왔고,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임.

- 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조선인권연구협의회(Institute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 장애자지원협회(Association for Assisting Handicapped Persons), 법률가 협회(Bar Association) 민주변호사회 등 인권단체가 있음.
 - 조선직업총동맹(노동조합), 농민근로대중조합, 청년동맹, 여성연맹, 문학예술조합총연맹 등이 인권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

- 북한에는 두 종류의 노동조합이 있음.
 - 하나는 국가기관, 공장, 기업 또는 사회협동조합 등으로 정치적인 역할 수행. 이 기관의 노동자들은 고용인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위나 단체교섭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 다른 하나는 개인기업, 즉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임.

(6) 가족의 보호와 결혼에 관한 권리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음.

- 국가는 노동자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하고 가정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

(가) 결혼과 가정에 관한 권리

○독신 남녀간의 자유 결혼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결혼은 법으로 금지됨.

- 결혼 연령은 남성은 최하 18세, 여성은 최하 17세임.
- 결혼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마쳐야 국가의 보호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결혼은 금지됨.
- 국가는 산아제한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나)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평등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

- 자녀 양육과 이혼문제 등에 관해 부모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이혼은 재판소의 판정에 의해서만 허용
- 이혼 당시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어머니가 부양하고, 자녀가 노동연령에 달할 때까지 상대방에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부양비는 보통 월급의 10~30%의 범위에서 결정).

(다) 어린이의 보호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학령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주고,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며,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함.
 - 15세까지 의무교육 실시
- 북한의 최소 노동 연령은 16세이며, 어린이 노동은 국가가 금지함.
- 1995년 이후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음.

(7) 평가

- 사회통제(정보교환 및 일탈행위 방지)의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행

및 거주이전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여행은 관계기관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가능하며, 여행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
- 외국인의 여행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음.
- 정치범이나 체제불만자들에 대한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임.
-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현과 언론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외부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실시됨.

- 최근 CNN방송이 외국인 전용 호텔에서 시청되고 공무원에 한해서 인터넷이 제한적으로 허용¹⁰⁾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외부정보 입수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정치범으로 간주
- TV, 라디오 등은 국내방송에 고정
- 출판 및 문화예술 활동은 노동당의 사전 검열
- 허가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노동교화형에 처함.
- 북한에 존재하는 사회단체와 정당(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방조자 기능 수행

10) 미 북한인권보고서 2000 참조.

- 법규정과는 달리 신앙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전무한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 또는 지원하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할의 기능 수행
 - 최근 지하종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해지고 있음.
 -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1999년도에 23명의 기독교도가 처형됨.¹¹⁾

-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대한 침해와 관련, 도청, 생활총화제도 및 인민반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음.
 - 도청의 대상은 일반주민들 뿐만 아니라 당·정·군 고위간부들에게도 적용
 - 생활총화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생활까지 조직에 보고
 - 인민반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검열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에서는 북한의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교육 등 헌장이 규정한 내용과 괴리가 있고,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1997년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

11) 위의 보고서 참조.

을 받고 있다고 지적¹²⁾)

사. 참정권: 공공 생활에의 참여 권리

(1) 정부에 참여할 권리

○주민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원들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

- 1998년에 선출된 제10차 최고인민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노동자가 31.3%, 협동조합 농민이 9.3%임.

- 대의원이 신임을 잃었을 경우에 선거자는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일반, 평등, 직접, 비밀 선거원칙을 준수함.

12) 미 북한인권보고서 1999 참조

(3) 평가

- 북한당국이 법으로 보장하는 참정권은 유명무실하고, 주민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함.
 - 북한 당국은 자유선거와 정당간의 경쟁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비난
 - 각종 선거는 비정규적으로 치루어지고 노동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99%투표율에 100%가 당선됨.
 - 북한의 선거는 김정일이 통제하는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아. 여성의 지위

(1) 남녀평등권

-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46년부터 법에 의해서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을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음.
 - 여성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소유권 및 근로권을 가지고,
 - 일부다처제와 여성매매 금지

- 노동법, 어린이 보육법, 공공보건법 등에서 여성에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998년 여성기술자, 전문가의 수는 726,000명에 달하며 현재 국가 경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은 48.4%임.
- 제10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여성은 20.1%, 사회민주당은 7.6%, 천도교의 청우당은 3.4%, 무소속은 1.5%임.

○ 노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킴.

(2) 평가

○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최고인민회의 진출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약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와 51.7%로 남성보다 높아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임(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66.4%임).

○가정에서도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여성은 직장생활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실정임.

- 식량난 악화로 식구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가족들의 압력과 심지어는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가족부양을 위해서 자진해서 인신매매를 지원함.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성폭행임.

- 노동당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 등을 미끼로 당 간부의 부하 여성직원에게 대한 성폭행이 자주 발생함.

-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인 현상으로 지적됨.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여성보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

- 둘째 아이의 낙태 추세가 늘고, 약제부족과 비위생적인 시술로 후유증 심각

- 임신부의 영양부족으로 위험 사례 증가

자. 종합평가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선언적인 차원

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반응을 보인 것임.

- 유엔인권소위가 요청한 정기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일차적 의무 수행
- 국제인권규약 준수 의지 표명
- CNN과 인터넷 등 대외정보에 대한 제한적 개방 등임.

○ 그러나 인권관련 법적 보호와 현실과의 괴리가 현격하여 실질적인 인권개선 조치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 AI, 미 북한인권보고서 및 통일연구원 등 국내외 인권조사기구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음.

- 공개처형이나 사법권을 초월한 사형
- 정치범수용소와 행방불명
- 종교 탄압
- 전 주민의 성분분류에 의한 사회적 차별 등

IV. 북한의 인권외교

1. 북한의 대외개방과 인권개선 가능성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외국과의 경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방위’ 실리외교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관련, 북한은 인권외교의 활성화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함.

- 따라서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 등 국제적 의무를 일단 수행하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경협을 확대를 추진

○최근 북한은 독일과의 외교 수립을 합의하면서

-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편의 제공 약속
- 독일기자들의 입국 허용 및 기자들의 활동에 협력
-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상호협약

○북한은 2001년 3월 6일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1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여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음.

- 한국 정부도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과 북한과의 수교를 장려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인권중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북한의 인권외교 추진 방향

-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을 대외에 선전하면서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것임.
-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북한에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부터 실행할 가능성이 높음.
 -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기구 및 국제 민간단체들의 북한방문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이나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투명성 보장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확보 차원에서 지원규모, 지원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장
- 북한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온 유럽연합과 유럽국가들

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 모색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려 할 것임.

- 독일에 이어 프랑스 및 그리스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
- 유럽연합회원국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유럽연합과의 관계정상화 수립 추구

○북한 내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은

- 공개처형의 제한과 비밀처형으로 전환
- 1995년도 개정 형사소송법 공개
- 대외개방과 관련, 변호사의 양성 및 역할의 변화 가능성
- 노골적인 종교탄압을 자제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등 주민들의 사상교육 강화
- 대외 테러와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 자제
- 정부의 엄격한 규제아래 외국정보의 제한적 개방 등

V. 우리의 고려사항

-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
 - 남북한간 현안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북한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전달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임.
 - 또한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 가능

-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을 집중함.
 -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유엔인권위 대표와 유엔인권소위 위원들을 초청하여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이산가족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 북한의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 요구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책 모색

- 국제적 관례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등 다자적 접근과 우방을 통한 대북 설득과 우회적인 압력도 효과적임.
 - 유엔산하 인권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들(NGOs)을 활용
 - 유럽연합 회원국들 및 유럽연합 등 지역기구를 활용

-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인권외교를 강화함.
-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 등 체제변혁을 유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선을 요구
- 2차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내 이산가족 차별 금지(성분차별), 정치범수용소 및 연좌제 폐지, 공개처형 금지 및 해외 이민요구 허용 등
- 또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들의 자료축적 및 자료의 공유화 추진